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장이 군수품의 구분·결정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의 구분·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1인에게만 승인하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27.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군수품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

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품을 구분·결정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구분·결정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구매하는 경우”를 “구매·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성능개량을”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제57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
2.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군수품의 구분·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상 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방위사업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중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중개업·수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생략 가능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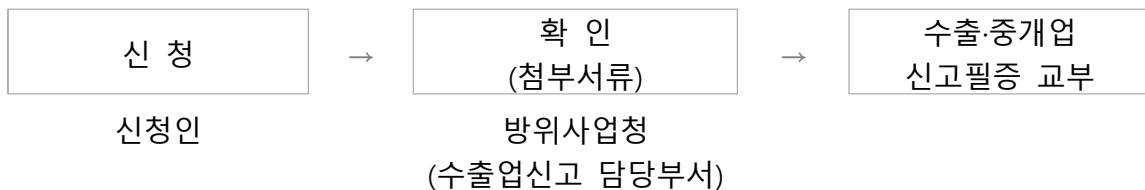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결정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군수품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품을 구분·결정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구분·결정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

(생략)

②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9조(성능개량) ① (생략)

②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을 추진하거나 소요군이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성능개량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② -----

----- 구매
· 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성능개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을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3. (생략)

<신 설>

② ~ ⑥ (생략)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한다.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① -----

-----.

제1호 및 제2호-----
-----.

<삭 제>

1.·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④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할 때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④-----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
2.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⑥ (현행과 같음)